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세부적격심사기준 내용해설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과

I. 들어가는말

지난 '99. 9.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의 구매·제조·용역의 경쟁입찰시에 낙찰자결정의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여 왔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이 그동안 세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미비한 점들이 조금씩 보완되었고 '99년 동 제도를 처음 적용당시만 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발주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느낌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8. 10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1호), 지방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 개정내용에 대하여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보기로 한다.

II. 개정이유 및 취지

최근들어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신규건설업체는 급증되고 이에따라 전체업체별 평균수주액이 점차 낮아지고 부실, 무자격 업체가 양산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있는 우수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공실적 평가대상이 제외되는 공사금액의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제도 도입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낙찰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토록 하기 위

해 감점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등에 대한 경쟁입찰시에는 관계공무원,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지방계약심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결정시까지 참여토록 하였다.

이밖에 그동안 적격심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적격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대토록 하였다.

Ⅲ. 세부개선내용

1. 부실·무자격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적격심사방법 개선

□ 필요성

- 건설공사물량의 감소에도 건설업체수는 급증하여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1업체 평균수주(억원)	70.5	52.9	30.9	23.2
(년도)업체수	(’98)4,191	(’99)5,147	(00)7,978	(01)10,627

- 신규업체의 건설시장 참여가 용이하여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paper company 등 무자격 업체들이 난립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 낙찰후 전매 및 일괄하도급 성행 등 건설공사의 부실화 및 건설업전체의 공동 부실화현상 발생되고 있음

□ 개선내용

- 가. 시공실적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를 축소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일반공사 → 3억원 미만 공사

- 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

- 최근 3년간 시공실적 누계가 당해 공사추정가격대비 50% 이상시 만점으로 평가

현행
○ 10억미만 공사 - 가격점수 : 90점 - 경영상태 : 10점 - 특별신인도 : + 2점



개선
○ 10억미만~3억이상 공사 - 가격점수 : 80점 - 시공실적 : 10점 - 경영상태 : 10점 ○ 3억미만 공사 - 가격점수 : 90점 - 경영상태 : 10점 - 특별신인도 : + 2점

※ 지자체의 10억미만 공사가 전체공사 건수의 97%를 차지(3억미만 88.6%)

- 다. 낙찰자 결정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 50억원미만 일반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 배제토록 함
-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기준에 의해 건설기술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적격심사시 감점(10점)토록 함
- ※ 건설기술인협회는 업체로부터 건설기술자의 취업·퇴직상황을 분기별(수시신고가능) 보고 또는 신고업무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1)

2.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능력평가 항목 신설

□ 필 요 성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확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채증가로 경영상태 점수가 낮아져 적격심사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업계의 기술개발촉진을 유도

□ 개선내용

- 100억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외에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추가함

현 행 (70점)
○ 시공경험(20), 경영상태(20)
○ 하도급관리계획(12)
○ 자재 및 인력가격 적정성(14)
○ 시공여유율(4)



개 선 (70점)
○ 시공경험(16), 경영상태(16)
○ 하도급관리계획(12)
○ 자재 및 인력가격 적정성(14)
○ 시공여유율(4)
○ 기술능력(8)

※ 기술능력 : 기술자보유, 설비 및 장비보유, 기술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3. 『지방계약심의회』 설치·운영

□ 필 요 성

- 발주기관의 자의적·편협적인 입찰 및 낙찰자결정을 방지하고 입찰의 투명성·공정성 확대

□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방계약심의회』를 구성하여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 결정시까지 참여
 - 구성 : 관계공무원,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인 이내
 - 내용 : 실적제한범위, 수행능력 평가방법, 기타 적격심사 관련사항 등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

-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자문내용은 법령, 예규 등의 범위내에서 경리관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국한

4.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산평가제 개선

□ 필 요 성

- 지역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개선내용

- 대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기준을 축소조정

현 행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이상인 경우 그 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



개 선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5.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시 평점확대

□ 필 요 성

-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개선내용

현 행
○ 전체공사중 하도급비율 평점 - 40%이상 : 5~6점 - 30%이상 : 4~5점
○ 계약금액중 하수급비율 평점 - 77%이상(3점), 80%이상(4점), 83%이상(5점), 87%이상(6점), 100%이상(5점)



개 선
○ 전체공사중 하도급비율 평점 - 40%이상 : 5~6점 - 30%이상 : 4~5점
○ 계약금액중 하수급비율 평점 - 77%이상(3점), 80%이상(4점), 83%이상(5점), 87%이상(6점), 100%이상(5점)
○ 의무하도급비율(33%)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20%이상 배분시 가산점 부여 - 100억이상 : 2점 - 50억이상 : 1점

6. 50억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에 『재해율』 추가

□ 필 요 성

-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 예방
- 부실공사의 근절과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



□ 개선내용

- 업계전체평균 『재해율』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현행 신인도 평가
○ 가점 -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 감점 -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자 - 계약질서 위반자로서 서면경고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개 선
○ 가점 - 우수건설업자, 재해율이 평균재해율보다 낮은 자
○ 감점 -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자 - 계약질서 위반자로 서면경고자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7. 부도·파산·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의 적격심사배제

□ 필 요 성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업체의 부실시공,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피해를 사전예방

□ 개선내용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

격심사에서 완전 배제

현 행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상태의 업체는 경영상태 평가대상에서 배제



개 선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상태의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완전배제

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에 따른 실적인정방법 개선

□ 필 요 성

- 업체가 실제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여 실적인정의 공정성 확보

□ 개선내용

현 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를 시공중 탈퇴한 경우 -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전체의 실적인정



개 선
○ 잔존구성원이 대신하여 실제 시공한 부분만 인정
○ 다만, 탈퇴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거나 완전소멸된 경우에는 공사당시 잔존구성원이 하자보증서 제출시 전체실적으로 인정

9.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항목 추가

□ 필 요 성

- 부도이후 법정관리 업체의 유동부채 및 자산이 고정부채 및 고정자산화되는 현상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는 사례를 방지

□ 개선내용

- 고정부채비율 및 매출액 영업이익율 평가항목을 신설
- 건설업체가 제조업 등과 통합운영되는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건설업 부문만 평가하도록 함

현행 100억원이상 경영상태
○ 부채비율(10점) ○ 유동비율(10점) ○ 매출액순이익율(6.0점) ○ 총자본회전율(5.0점) ○ 최근 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4.0점)



개 선
○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2.5) ○ 매출액 영업이익율(2.5) ○ 부채비율(10) ○ 유동비율(8.0) ○ 매출액순이익율(7.0) ○ 총자본회전율(5.0)

10. 기타 주요개정내용

① 지자체에서 P.Q 및 턴키공사를 자체 발주하는 경우 국가적격심사기준을 준용토록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중 100억이상 P.Q 공사, 턴키공사 등은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의뢰토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과 사전 서면협의를 한 경우 자체발주토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재정부 회계예규 및 조달청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규정함

② 잘못발급된 적격심사 서류의 책임소재를 규정

- 신고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공실적·경영상태 등 적격심사서류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 책임이 있고, 증명서 발급시 발급기관(협회)의 귀책사유로 적격심사서류가 잘못 발급된 경우는 발급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함

③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 평가시 신인도 평가방법 개선

- 발주하려는 공사의 해당업종에 대한 우수업체만 인정



④ 공동도급시 출자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 그동안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중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실제 시공하였다는 증명(발주기관 및 공동수급체連名)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적 인정하였으나
⇒ 공동도급시에는 출자비율에 의한 실적만 인정

⑤ 적격심사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조문정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각 분야별 평점은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에서 소수점이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 각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또다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가 있는 경우 다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IV. 맺 는 말

이상으로 금번에 개정·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예규 제81호)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82호)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쟁계약에서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가격입찰은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입찰』의 덕분에 그 투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적격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제 어느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경쟁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서 완벽한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일선 계약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번에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의 내용 및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